석면조사분석기관
미래환경분석
MIRE ENVIRONMENT ANALYSIS

석면 조사 결과 보고서

『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3길 7
타임스퀘어 지하공영주차장 석면 조사』

(주) 미 래 환 경 분 석

조 사 자 신 병 철 분 석 자 김 경 아

시 행 (주) 미 래 환 경 분 석

(우) 150-9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00-3 대명빌딩 204호

(전화) 1588-3197 / 전송 02) 538-4941 / mireenv@naver.com

● 조사 방법

석면 조사 준비

↓

조사 대상물 건축도면 조사

↓

조사 대상물 현장 조사

↓

조사물질의 위치파악 및 기록

↓

비산 가능성 평가

↓

Homogeneous Area 구분

↓

Bulk 시료 채취 및 기록

● 석면 분석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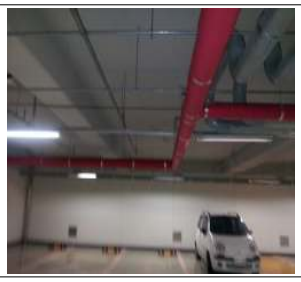
- Bulk(고형) 시료의 분석은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(노동부 고시 제2009-32호) 중 "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 등의 석면분석법을 따른다.

		
Hume Hood(흄 후드)	Polarizing Microscope (편광 현미경)	Stereo Microscope (실체현미경)

● 조사대상 현황

건 축 물 명	타임스퀘어 지하공영주차장				
현 장 주 소	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3길 7				
조사 완료일	2013년 5월 8일				
건 물 현 황	구 조	용 도	조사면적(㎡)	층수(지상/지하)	석면함유여부
	철근콘크리트	공영주차장	6,702.03	0/2	무석면

● 조사사진

<table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2"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조사사진</td><td>조사사진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건축물 전경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조사사진</td><td>조사사진</td><td>조사사진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조사사진</td><td>조사사진</td><td>조사사진</td><td>조사사진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조사사진</td><td>조사사진</td><td>조사사진</td><td>조사사진</td></tr>
</table>

● 시료채취 현황

시료 번호	채 취 장 소			종 류	시료수	결 과
S#01	지하1층	계단실	천장재	텍스	1	불검출
S#02	지하1층	주차장	분무재	뿜칠재	3	불검출

● 분석결과 현황

시료 번호	시료채취 장소	시료위치 / 시료종류	분 석 결 과 / 석면종류/비석면종류 및 함유량	사진
S#01	지하1층 (계단실)	천장재	무석면 (Non - Asbestos)	
		텍 스	28 ~ 35% Cellulous 65 ~ 72% Non-Fibrous	
S#02 -1	지하1층 (주차장)	분무재	무석면 (Non - Asbestos)	
		뿜칠재	35 ~ 37% Cellulous 63 ~ 65% Non-Fibrous	
S#02 -2	지하1층 (주차장)	분무재	무석면 (Non - Asbestos)	
		뿜칠재	35 ~ 37% Cellulous 63 ~ 65% Non-Fibrous	
S#02 -3	지하1층 (주차장)	분무재	무석면 (Non - Asbestos)	
		뿜칠재	35 ~ 37% Cellulous 63 ~ 65% Non-Fibrous	

● 석면 조사 결과 종합의견

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3길 7 타임스퀘어 지하공영주차장 석면조사 결과, 석면 의심 자재로 추정되었던 시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**무석면 자재**로 검출되었습니다. 그 외의 석면 의심 자재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.

철거·해체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기관에 의뢰하여 석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하며, 철거·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『산업안전보건법』의 『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'보건규칙'이라 함)』에 석면 해체·제거 작업 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,

석면 1%를 초과하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체·제거하는 경우에는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(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)

위에 내용을 참고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(석면해체·철거업자)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·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.

※ 첨부 : 석면조사기관 지정서

제2011-120003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변경)

기 관 명	(주)미래환경분석	
소 재 지	(150-904)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제1동(대림동) 700번지3호 대명빌딩 204호	
대표자성명	신병철	
지정사항	총 대행(지정) 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관 할 지 역 대행(지정) 한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대행(지정) 지역	제한없음

※ 준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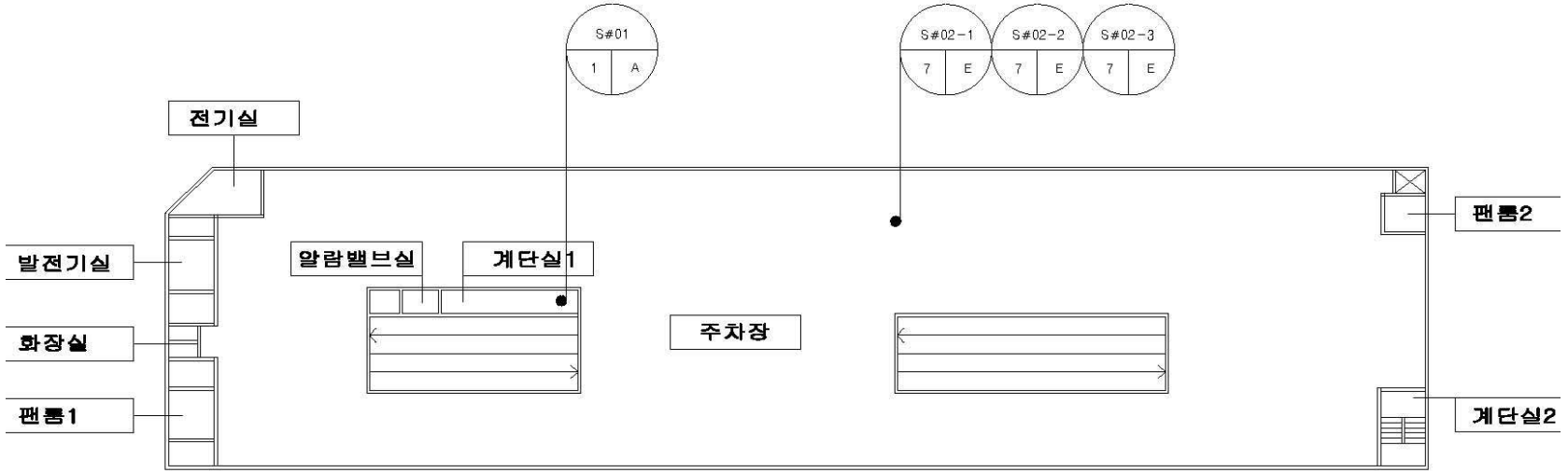
1.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지방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2. 석면조사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1. 8. 1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



타임스퀘어 지하1층

석면함유 지점 범례

시료번호

시료위치 | 재 질 (함유율%)

검출구역

시료위치	재 질
1 : 천장재	A : 텍 스
2 : 바닥재	B : 슬레이트
3 : 벽 재	C : 방라이트
4 : 지붕재	D : 석 고
5 : 보온재	E : 뿜 칠 재
6 : 단열재	F : 타 일
7 : 분무재	G : 유리섬유
8 : 개스킷	
9 : 내화피복재	
10 : 기타물질	

지붕재 / 내화피복재
천장재 / 배관재 (보온재)
벽 재 / 칸막이
바닥재 / 배관재 (연결)
분무재 (뿜칠재) / 기타물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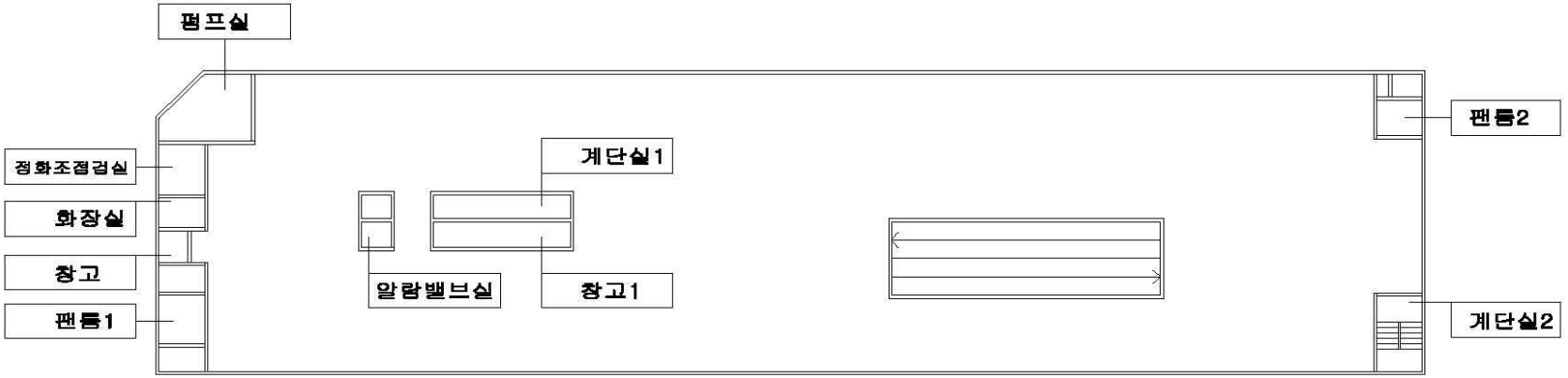
비석면함유 지점 범례

시료번호

종류 | 재질

시료번호	채취장소	건축자재	동일구역	면적 (㎡)	석면종류	함유율 (%)	위해성 평가점수	관리 방안
S#01	계단실	텍스	-	-	-	-	-	- 석면함유의심물질에 대한 시료분석 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거나, 석면 의심 자재 없음
S#02-1	주차장	뿜칠재	-	-	-	-	-	
S#02-2	주차장	뿜칠재	-	-	-	-	-	
S#02-3	주차장	뿜칠재	-	-	-	-	-	

조사 지역	
현장주소 (기관명)	타임스퀘어 지하공영주차장
조사완료일	2013.05.08
도면번호	MR-130508-01
조사기관	(주) 미래환경분석



타임스퀘어 지하2층

석면함유 지점 범례

시료번호
시료위치 | 재 질 (함유율%)
검출구역

시료위치	재 질
1 : 천장재	A : 텍 스
2 : 바닥재	B : 슬레이트
3 : 벽 재	C : 방라이트
4 : 지붕재	D : 석 고
5 : 보온재	E : 뿜 칠 재
6 : 단열재	F : 타 일
7 : 분무재	G : 유리섬유
8 : 개스킷	
9 : 내화피복재	
10 : 기타물질	

지붕재 / 내화피복재
천장재 / 배관재 (보온재)
벽 재 / 칸막이
바닥재 / 배관재 (연결)
분무재 (뿜칠재) / 기타물질

비석면함유 지점 범례

시료번호
종류 | 재질

시료번호	채취장소	건축자재	동일구역	면적 (㎡)	석면종류	함유율 (%)	위해성 평가점수	관리 방안
-	-	-	-	-	-	-	-	- 석면함유의심물질에 대한 시료분석 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거나, 석면 의심 자재 없음
			이하여백					

조사 지역	
현장주소 (기관명)	타임스퀘어 지하공영주차장
조사완료일	2013.05.08
도면번호	MR-130508-02
조사기관	(주) 미래환경분석